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7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3,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fair1110@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7. .

발 의 자 : 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7개의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를 삭제

나. “산하기관” 용어 정의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
(제4조의4 → 제10조의3 이동)

다. 위 ‘가’와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12호 서식 삭제

3. 관련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제3호 중 “산하기관”을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u> <u>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 등(이하“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자신이 소속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u> <u>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u>	<u><삭 제></u>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
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
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
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
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
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
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
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
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
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
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으면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삭 제>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삭 제>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
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
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
무일 때에 그 의회의 상대방
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
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
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하
나.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
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
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삭 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시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

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삭 제>

<삭 제>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 2. (생략)

3.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생략)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무상일 때를 포함한다)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

1. · 2. (현행과 같음)

3. -----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현행과 같음)

<삭 제>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
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
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
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
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
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
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
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
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
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
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
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
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
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일 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